

2025년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

「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」 제9조에 따라 『2025년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』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10일

고양시장

- 사업목적** : 고양시 한옥건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옥 건축의 활성화 유도
- 공고 및 접수기간** : 2025. 2. 10.(월) ~ 2. 21.(금)
- 지원대상** : 고양시 관내 「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의 수선 및 경관조성시설물
 - 권장용도 :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, 한옥체험시설
 - 지원제외용도 : 위락시설,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·안마시술소
- 신청자격** : 사업대상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
(공동지분 건축물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)
- 신청방법** : 고양시 건축정책과(건축정책팀) 방문 접수
(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, 원당쥬시티 4층(주교동))
- 사업기간** : 2025. 3. ~ 2025. 11.
- 지원 금액** : 총 공사비 내 최대 2,000만원 지원 (1개소 예정)

8. 지원절차

| 사업절차 | 내 용 | 담 당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사업공고 | • 고양시청 홈페이지 등 활용 | 고양시 | 공고문 게시 |
| 사업 신청 | 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| 건축주 |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 |
| 심사·선정 (3월) | • 1차 :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• 2차 : 건축위원회 심의 • 지원대상자 결정·통보 (한옥 등록증 교부) | 고양시 | 심의 |
| 사업 추진 (2월 ~) | • 시공자 선정 및 착공(6개월 이내) • 착수신고서 제출 • 공사(분기별 추진실적 보고) • 공사완료 및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| 건축주 | [붙임 1] 첨부7~10 |
| 사업 정산 (~ 11월) | • 공사완료신고서 및 현장 확인 • 보조금 교부 및 정산 | 고양시 | 보조금 정산 |

9. 제출서류

- 한옥 건축·수선 등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첨부1)
-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·사용 권리 증명 서류(등기부등본 외)
- 현황사진(첨부3)
-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
(설계도면이 필요 없는 경보수의 경우 제외 가능)
- 공사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(공정, 범위, 기간 등 구체적 명시)
- 공사금액을 부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통장 사본 등)
- 한옥 등록신청서(첨부4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첨부5)
- 청렴이행서약서(첨부6)

10. 지원대상자 선정방법

-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
[고양시 건축위원회 평가 기준]

| 평가분야 | 평가항목 | 배점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수선의 긴급성 | 수선의 범위와 정도가 건축물의 안전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| 30 |
| 보존가치 |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·경제적·경관적 가치 | 25 |
| 총공사비 | 총공사비 대비 자비 부담 비율 | 20 |
| 사전신청여부 | 전년도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자 | 15 |
| 권장용도 |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, 한옥체험시설 | 10 |

11. 결과 발표 : 2월 중(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- 고양시청 홈페이지(www.goyang.go.kr) 게시 및 개별 통보

12. 사업 안내 사항(필수)

-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「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」 및 「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
 - ※ 공사예정금액(부가세 포함 금액) 1,500만원 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
- 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「한옥 건축 기준」[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242호]을 준용합니다.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사업 신청 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의 통장(계좌)을 별도 개설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절차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2025년 11월까지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-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양시 건축정책과 한옥 건축 지원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
14. 기타 유의 사항

-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건축주 등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가급적 고양시 관내 자재 구입 및 공사계약을 권장합니다.
- 한옥건축 지원사업 절차 중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건축인허가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건축주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같은 대상으로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해 국비, 도비, 시·군비를 이중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「고양시 한옥건축 지원사업」의 건축(20년), 수선(10년), 「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」의 소규모 수선(2년)이 지난 경우는 지원할 수 있음.
- 허위 사실 기재,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시 지원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당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보조 사업자의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청 건축정책과(☎031-8075-312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신청서 서식 각 1부.

2. 「한옥 건축 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) 1부.

3. 「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」 1부. 끝.